

제39기 의안설명서

제1호 의안

제39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4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9기 재무제표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전 문 주식회사 풀무원(이하 “풀무원 또는 “이 회사”)은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환경적(Environmental)’ 가치 창출을 ‘풀무원의 사회적 책임’으로 정의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공유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p> <p>1) 경제적 가치: 안전, 안심, 건강, 지구환경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담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한다. [개정 21.03.25]</p> <p>2) 사회적 가치: 공정하고 투명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경영과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기업 경영으로 우리 사회의 공존과 지속에 공헌한다. [개정 21.03.25]</p> <p>3) 환경적 가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경영의 요인을 발굴 및 최소화하여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한다.</p> <p>[미션] 풀무원은 풀무원농장 원경선 원장의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업 풀무원의 정신으로 계승하여,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기업의 미션으로 진화 시켜왔다. 풀무원은 LOHAS사업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바른먹거리(식생활) 사업과 건강생활(개인생활, 사회생활)사업을 풀무원의 LOHAS 핵심사업으로 하여 고객의 몸과 마음의 건강 및 행복 증진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구 환경과의 조화로운 삶이 주는 가치를 사회에 확산하는데 공헌해야 한다. [개정 21.03.25]</p>	<p>1955년, 경기도 부천의 농부 원경선은, 한국전쟁 뒤 떠도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함께 농사 짓고 살던 농장에 ‘풀무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풀무질로 쓸모없는 쇠붙이가 농기구가 되듯이 농사를 지으며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다. 브랜드 ‘풀무원’은 농부 원경선의 사람과 자연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것이다.</p> <p>1976년, 환갑을 넘은 고령의 농부 원경선은 부천 풀무원 농장의 식구들과 소 6마리를 이끌고 농약과 화학비료로 오염되지 않은 경기도 양주로 이사했다. 한국 땅에 첫 유기농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었다. 3년을 애써서 마침내 성공했다.</p> <p>이 혁신적이고 이타적인 농부 원경선이 유기농이라는 선한 농업으로 이루고자 했던 가치의 핵심은 ‘이웃사랑 생명존중’이었다. 당연하게도 풀무원의 브랜드 정신은 ‘이웃사랑 생명존중’이다.</p> <p>1981년 5월 12일, 서울 강남의 골목길에 작은 채소가게가 문을 열었다. ‘풀무원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 원경선의 풀무원 농장에서 기른 유기농 채소와 곡식을 파는 가게였다. 유기농이 별 알려지지 않은 때여서 ‘무공해’라고 했다. 이 가게는 맛과 모양만으로 식품을 선택해 온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내재 가치라는 새롭고 소중한 기준을 제시했다.</p> <p>작지만 큰, 풀무원의 창업이다.</p>	<p>- 신가치체계 재정비에 따른 전문 변경 (※풀무원의 정체성 및 배경·방향성에 대한 서술식 설명)</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비전] 매출과 수익은 물론,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LOHAS 기업이 되는 것이 풀무원의 중장기 목표이다. LOHAS 가치 실현을 위한 Product Leadership, Customer Intimacy, Operational Excellence, Environmental Stewardship 확보를 목표로 끊임없이 혁신하여 Global No.1 LOHAS Company를 달성할 것이다. [개정 21,03,25]</p>	<p>1984년 5월, '풀무원식품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유기농산물 가게이면서 두 부, 콩나물을 건강하고 값진 '바른먹거리'로 진화시키고, 현대인의 불균형한 식생활을 보완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까지 제조업을 확대해 성공을 거두었다. 언제나 '바름'을 추구하는 식품회사 풀무원의 창사이다. 풀무원은 이렇게 세워져 '처음'을 잊지 않고 혁신을 거듭하여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식품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앞으로도 브랜드 정신인 '이웃사랑 생명존중'의 가르침대로 사람과 자연에 모두 이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추구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또한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풀무원의 미션은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러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끊임없이 혁신한다. 특히 식물성지향 식품과 동물복지 식품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제품화를 이끈다. 나아가 풀무원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역량으로 개별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풀무원은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사업의 출발점인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사업의 타적인 사회와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진지하게 모색하고 실천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다. 그럼으로써 회사와 우리 공동체,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한다. 풀무원은 경영의 이해관계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첫째,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풀무원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구성원의 인권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나아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유념한다. 셋째, 풀무원의 동반자인 협력기업과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로 상생을 도모한다. 넷째, 사업의 타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선다. 다섯째,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드높이고 주주에게 지속가능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섯째, 우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환경에 이로움을 고려하고 실천한다. 이는 풀무원 백년의 지도이다.</p>	
<p>[핵심가치 : Passion with TISO] 1. Trust(약속과 규정을 지키는 신뢰성) 약속과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여 행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개정 21,03,25] 2. Integrity(바른 직무수행을 위한 직업적 정직성)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항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한다. [개정 21,03,25] 3. Solidarity(조직의 가치체계와 목표에 자기 업무를 연계시키는 연대의식) 풀무원의 LOHAS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조직의 목적과 전략에 반영하여 실천한다. [개정 21,03,25] 4. Openness(늘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개방성)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건설적 비판을 권장하여 창조적 협업을 촉진한다. [개정 21,03,25] 5. Passion(지식직업자로서 혁신에 몰입하는 열정) 일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몰입하여 공유가치창출에 공헌한다. [개정 21,03,25]</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⑨ (생략) ⑩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p>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⑨ (좌동) ⑩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무/비재무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p>－ 문구의 명확화</p>
<p>제 13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생략) 2~5 (생략) 	<p>제 13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좌동) 2~5 (좌동) 	<p>－ 자금 유동성 확보</p>
<p>제 20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총괄 CEO 대표이사로 한다. ② 총괄 CEO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20 조 (의장) 제 20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를 해당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주주총회 의장 선임대상의 확대</p>
<p>제38조의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이 회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 제397조의2 및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의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이 회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 제397조의2 및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이사 책임 감경의 결정 주체(절차)를 주주(주주총회)로 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총괄 CEO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p>	<p>제4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총괄 CEO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의 결의로 승인하여야 한다.</p> <p>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p>	<p>- 상법 제4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제표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함을 명시 및 명확화</p>
(신설)	부칙 (13)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환 선임의 건(재선임)

구분	성명	출생년도 / 추천인	주요 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사외이사	김영환	1958년 / 이사회	現 인공지능연구원장 前 KT네트웍스 대표이사 前 KT 대외협력실 실장, KT 비즈니스부문 부문장, 前 KT 고객부문 부문장	없음	임원	없음	없음	없음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심수옥 선임의 건(재선임)

구분	성명	출생년도 / 추천인	주요 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사외이사	심수옥	1962년 / 이사회	現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前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산학교수 前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실장, 부사장	없음	임원	없음	없음	없음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김영환 선임의 건(재선임)

구분	성명	출생년도 / 추천인	주요 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사외이사	김영환	1958년 / 이사회	現 인공지능연구원장 前 KT네트웍스 대표이사 前 KT 대외협력실 실장, KT 비즈니스부문 부문장, 前 KT 고객부문 부문장	없음	임원	없음	없음	없음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당 기	전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11명 (8명)	11명 (8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500백만원	5,000백만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100백만원

* 상기 보수한도 및 보수총액에는 전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제외하였습니다.

제6호 의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45조(고문역/자문역 위촉) ①~② (생략) ③ 고문역 또는 자문역에 위촉되지 않는 퇴임 경영간부 중 재직기간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괄CEO가 결정하고 자문역 위촉 시 보상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45조(고문역/자문역 위촉) ①~② (생략) ③ 고문역 또는 자문역에 위촉되지 않는 퇴임 경영간부 중 재직기간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 후 보상위원회가 결정하고 자문역 위촉 시 보상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p>	- 주주권의 제고를 위한 결정 주체의 상향 강화